

○구로구 오류동 14~50번지 일대 국·공유지 2,126㎡와 사유지 10,762㎡ 등 12,888㎡의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오류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 ○예정구역 내에는 91필지의 사유지가 있고,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필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, 지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.
 ○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·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,
 ○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 의견임.

5. 심사결과

보류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상도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
2. 제안이유 : 상도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(일부해제)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- 위치 : 동작구 상도동 산 64-39번지 일대
 - 내용
 - 면 적 : 11,886㎡(사유지 11,886㎡)
 - 건축물 : 13동(유허가 1동, 무허가 12동)
 - 세대수 : 33세대(가옥주 13, 세입자 20)
 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
 - 주민동의를
 - 토지면적 11,886㎡ : 동의 10,530㎡ (88.5%)
 - 토지소유자 34명 : 동의 32명(94.1%)
 - 건물소유자 13명 : 동의 13명(100%)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○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'73.12에 구역 지정되었다가 '82.4에 구역이 변경결정된 바 있는 동작구 상도동 산 64-39번지 일대 기정정된 26,729㎡의 재개발구역 중 11,886㎡를 해제하여 14,843㎡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본 구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기정 재개발구역에서 벗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토지주의 88.5%의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구역 변경안에는 동의 의견임.

※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, 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존치지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,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,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조정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.

5. 심사결과

보류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- 위치 :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
 - 내용
 - 면적 : 1,621,000㎡→1,623,809㎡(증 2,809㎡)
 -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
 -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없음.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 -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-1에 있는 기존 월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,621,000㎡를 1,623,809㎡(증 2,809㎡)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,
 - 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